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합52560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경수제철

피고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5. 1. 14.

판결 선고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이하 '사랑의교회'라고 한다)가 발주한 서초동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0,0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8,250,000,000원), 기간 2011. 10. 4.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하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19. 쌍용건설이 당좌거래 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2011. 10. 4.부터 2013. 4. 30.까지 실제 시공되었으나 미지급된 대금을 보증금액 4,189,565,21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쌍용건설은 2013. 4. 5.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원래의 대금보다 544,500,000원 증액한 20,619,5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8,745,000,000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하고, 2013. 4. 30.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30.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쌍용건설 또는 사랑의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70,540,640원(원고가 고용보험료 항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3,460,640원 포함)을 받았다. 그러나 위 돈 외에 쌍용건설이 2013. 8. 28. 어음으로 발행한 552,420,000원은 만기인 2013. 12. 31.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쌍용건설은 그 무렵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에 기초하여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액면금 552,420,000원을 보증금으로 청구하였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그 청구서가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돈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4,459,360원(= 이 사건 계약의 대금 20,075,000,000원 - 지급된 대금 20,070,540,640원)에 불과하므로, 위 돈만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14. 3. 10. 원고 명의 계좌로 위 4,459,36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에서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544,5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와는 별개로 참나리길 설치공사, 남측타워 보강공사(지상층 중층공사), 철근용접 작업지원 및 외부비계 지지대설치 공사, 감리단 주차장 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쌍용건설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781,667,290원으로 정산하여 그 돈을 받았고, 쌍용건설과 이 사건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합하여 20,619,5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은 19,837,832,710원(= 위 정산금 20,619,500,000원 - 추가공사 대금 781,667,290원)인데, 위 추가공사의 대금은 이 사건 계약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의 대상인 이 사건 계약의 대금 19,837,832,710원 중 적어도 552,420,000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위 552,42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4,459,360원과 고용보험료 3,460,640원을 뺀 544,500,000원(= 552,420,000원 - 4,459,360원 - 3,460,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갑 제4에서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쌍용건설 또는 사랑의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를 하였거나, 원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비용이 증가된 공법으로 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쌍용건설은 2012. 3.부터 2013. 1.까지 매월 원고가 신청한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 기성검사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기성검사원'이라 한다)로 인정되는 기성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기성검사원에 이 사건 계약의 대금 18,2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성금 항목 외에 '추가공사'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별도로

기재되었다.

②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는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쌍용건설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러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다.

③ 쌍용건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 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거나 비용이 증가된 공사인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물론 을 제2호증의 기재도 그러한 취지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보증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주장한다. 다만 위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될 경우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 또는 쌍용건설은 피고에 그러한 증액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추가로 보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래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20,075,000,000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이 사건 정산에 따라 원래 대금보다 줄어든 19,837,832,71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원고가 쌍용건설 또는 사랑의교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합계는 20,070,540,640원에 이른다(다만 원고는 받은 위 공사대금 20,070,540,640원 중 781,667,290원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닌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이고, 그에 관한 채권이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채권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781,667,290원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고(원고가 받을 정당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781,667,290원이라는 점과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때문에 원고가 받지 못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피고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4,459,360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과 그에 따라 원고가 받지 못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2,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781,667,290원인 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있다는 점 또는 원고가 받지 못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피고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4,459,36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기성검사원에 쌍용건설이 인정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13. 1. 기준 기성검사원(갑 제4호증의 10)까지 인정된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 합계는 710,605,628원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781,666,190원($= 710,605,628\text{원} \times 1.1$,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이 인정된 것과는 별개로 기성검사원에 실제로 매달 지급할 기성금으로 기재된 액수와 내역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제외한 원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부분으로 보인다(기성검사원 본문 표에 기재된 '당월확정기성' 부분은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것이고, 그에 첨부된 '기성청구내역서'에도 추가공사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기성검사원에서 인정된 이 사건 계약의 기성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가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정산의 정산금이 정해진 구체적인 내역이 작성되지 않았다.

④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 신청에 대하여 1차로 회신한 공문(갑 제12호증)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수령 현황' 표에 따르면, 원고는 선금을 포함하여 2013. 4.경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의 대금으로 합계 20,067,080,000원을 받았다. 위 20,067,080,000원은 원래 이 사건 계약의 대금 20,075,000,000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⑤ 이 사건 정산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당시 쌍용건설의 자력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성검사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대금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던 추가공사의 대금을 기성검사원에서 인정한 것보다 감액하는 내용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쌍용건설이 2013. 8. 28. 발행한 어음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⑥ 원고와 쌍용건설, 사랑의교회는 2013. 2. 20.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그 합의서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1,6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2013. 3. 11.부터 7. 3.까지 사랑의교회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3,725,034,160원을 받았다.

라. 결국,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피고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4,459,36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오세영

판사주은영